



삼성 KPMG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투자실무가이드' 단행본 소개

2023년 6월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Contents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단행본 소개

- 01. ‘북한투자실무가이드’ 발간 개요
- 02. 단행본 내용 구성
- 03. 단행본 목차

01 발간개요

- 금번 단행본은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유) 태평양 남북관계 특별팀’과 협업, 2020년 11월 발간
- 삼정KPMG는 남북경제협력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 주제로 ‘북한 비즈니스 진출 방법과 전략’ 관련 대북 단행본 지속 발간 예정

발간 배경 및 목적

- 북한을 둘러싼 대내 외 환경 전환 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되는 시기에 대비
- 지금까지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 법무법인(유)태평양 남북관계특별팀과 협업, 기업들의 대북 사업 검토에 법제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북한 투자실무 가이드북 발간 추진
-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가능한 기업, 설립부터 청산까지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행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실질적 참고 서적으로서 기능 발휘 목적

02 단행본 내용구성

1. 북한 바로 알기, 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3. 어떤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5.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내용으로 구성

1

북한 바로알기

- 북한의 현주소, 북한의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투자환경 분석

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 북한에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 등을 종합

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 부동산, 노무,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실제 기업운영 절차 상세 안내

5

분쟁이 발생했을 때

-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 개성공단 선협사례 소개 등

03 단행본 목차

PART 1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은 지금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PART 2 투자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PART 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PART 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부동산 관리

노무관리

생산관리

무역(수출입) 관리

회계관리

조세관리

금융관리

해산 및 청산

PART 5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

참고할 만한 분쟁해결 사례

북한 바로 알기

1

북한은 지금

- 북한개요 : 정식 명칭, 수도, 인구, 면적, 소득, 인프라 등 개관
- 2,500여만의 인구구성과 평양 등 주요도시의 인구현황

2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 경제의 주요지표 : GNI, 통화, 환율, FDI현황
- 변화하는 산업구조 :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 어업 순
- 대외무역 동향 : 수출 및 수입, 남북교역 현황
-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 지하자원, 농작물, 수산물 현황

3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 교통 : 철도, 도로, 공항, 항만
- 전력 :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 통신 : 휴대전화 가입자 수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1

투자관련 법제 검토

- 외국인 일 경우
- 남측의 경우 : 북남경제협력법, 경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남북합의서, 남북교류협력법

2

외국인 투자가가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법제

- 외국인투자법(2011), 합작법(2014), 합영법(2014), 외국인 기업법(2011) 등

3

투자 가능 지역과 분야

- 남측은 북한 전 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해진 지역 등
- 투자가 가능 분야, 혜택, 보장 내용, : 남측, 외국인, 합영 및 합작기업으로 나누어 설명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남한의 북한 투자유치제도 : 남북협력기금 대출, 경험교역보험

4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정책

- 투자혜택, 투자관련 보장 내용,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남한의 북한 투자유치 제도

5

실제 투자는 어떻게?

- 투자가 별로 북한에서 설립가능한 기업 형태 설명

6

투자에 따르는 규제사항

- 교역제한품목, 한도물량제도, 국내법의 규제, 국제적 대북제재 소개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1

특수경제지대의 현재 상태

-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 5대 경제특구, 22개 경제개발구
- 투자현황 : 라선,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등

2

특수경제지대 투자관련 법제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 투자당사자, 투자장려 및 금지제한, 투자보장, 투자혜택
- 관리운영, 개발방식, 개발승인, 토지, 건물양도, 임대
- 기업창설, 기업권리, 노동제도
- 회계, 세금, 물자반출입 및 무역, 관세, 통화 및 금융, 계좌, 소득송금, 보험
- 지적재산권, 광고, 편의보장, 신변안전, 분쟁해결, 제재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1

설립가능한 기업 형태

- 남측의 경우 : 단독투자, 합작, 합영의 형태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외국인의 경우 : 합작기업, 합영기업 가능

2

기업형태별 특성과 차이

- 합작기업 : 공동투자, 북한 측 운영, 계약에 따라 출자몫을 상환받거나 이윤을 분배
- 합영기업 : 공동투자, 공동운영,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
- 외국인 기업 :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 정해진 지역에 한하여 설립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1

회사 설립의 기본절차

- 창설등록 -> 주소등록 -> 세무등록 -> 세관등록

2

기업 형태별 설립절차

- 합작기업 및 합영기업의 설립절차
: 설립신청 및 투자관리기관 승인, 등록, 출자, 영업허가 및 영업, 경영기구 등 설명
- 외국인 기업의 설립절차
: 설립신청 및 투자관리기관 승인, 등록, 출자, 영업허가 및 영업, 경영기구 등 설명

3

특수경제지대 내 회사 설립절차

- 일반적인 회사 설립절차(법인격 부여)
: 관리기관에 창설신청서 제출, 창설승인 후 출자 및 관리기관 등록, 세관 및 세무등록
: 지사, 사무소(법인격 X)의 경우 북한지점(영업활동)과 북한사무소(비영업)으로 구분
-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설립
: 일반적인 회사 설립과 유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통일부 협력승인, 수출입은행에 신고서 제출 등 필요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 회사 설립
: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관할

부동산

1

토지이용권은 필수

- 토지이용권 : 토지 개인소유 불가, 따라서 이용권을 통해 임차
- 토지임대 방법 및 절차 : 협상, 입찰, 경매
- 토지임대료,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
- 토지이용권의 취소 및 반환, 토지이용권의 한계

2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개발 및 공장 설립

- 해당 토지의 이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지고 설립
- 남한과는 달리 건축허가로 공장 설립허가를 갈음하고 준공 후 공장등록을 하면 설립 완료

3

특수경제지대의 부동산 관련 법률

- 경제특구법과 하위규정(토지임대규정, 부동산규정, 특구개발규정, 준칙 등 적용)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단, 금강산의 경우 별도의 부동산 규정 제정 그 외에는 별도로 없음.
- 특수법인 특수경제지대법이 우선, 토지임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노무관리, 생산관리

1

고용의 원칙과 절차

- 북한 근로자 우선고용원칙,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근로자 채용 절차 :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
- 노동계약 체결 : 직업동맹조직과 체결

2

근로조건은?

- 기준시간 1일 8시간, 1주 6일 48시간,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협의 후 연장근로 가능
- 명절과 일요일 휴무, 외국인 투자기업 14일 정기휴가, 중노동 및 유해노동, 임신 등 휴가
- 임금 :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 포함, 월최저임금, 휴가비, 생활보조금, 연장수당, 상금 등
- 근로환경,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직업동맹조직 등 명시

3

해고와 사직, 제재 및 분쟁해결

- (부당한)해고불가의 원칙, 사직가능, 퇴직금 규정 존재
-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 협의 원칙, 협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 중재, 재판

4

특수경제지대의 노무 관련 규정

- 대체로 유사하며 월최저임금기준의 결정기관에서만 차이가 존재

무역(수출입)관리

1

무역거래의 원칙과 제한, 통관 절차

- 무역법의 원칙, 무역거래의 당사자, 수출입 제한 금지대상 규정
- 통관 : 세관법 적용, 세관등록 수속 검사, 주의사항 등
- 남측 투자가 : 일반 통관절차와 위탁가공교역 통관 절차
- 외국 투자가의 수출입 :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각 시행규정 내용
- 남측 투자가의 수출입절차 : 남한 통일부장관과 북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 승인

2

운송관련 규정과 관세부과, 원산지 증명

- 운송관련 외국인투자법에는 규정X, 남측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준행
- 남북간 선박운항시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남북해운합의서 등 준행
- 관세관련 물자 수출과 생산품 수출의 경우 관세가 없으나 북한 내 판매 시 관세 부과
- 외국인의 경우 수출품원산지법, 남한 투자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3

특수경제지대의 수출입 관련 법률

- 개성공업지구 수출입 관련 규정 : 세관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 세관등록 필요
- 남측 투자가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수출입 관련 규정 준행
- 특수경제지대들의 경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상세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편

회계관리

1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

-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법 등 법제,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등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인 및 투자에 적용되는 법제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하는 법제
-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검증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개성공업지구회계검증규정
-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적용하는 재정 회계법 준용

2

재무제표 관련 규정

-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현금흐름표),
- 남북간 선박운항시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남북해운합의서 등 준행
- 관세관련 물자 수출과 생산물 수출의 경우 관세가 없으나 북한 내 판매 시 관세 부과

3

회계검증의 원칙과 규정

- 4가지 회계검증 일반 원칙 : 법규 준행, 질서확립, 주기에 따라 의무적, 검증원의 비밀유지
- 회계검증규정 : 투자, 결산, 계산, 청산, 인수인계, 대외협조, 송금, 고정자산변경
- 외국인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검증 규정 설명

조세관리

1

북한의 조세기준과 특례

- 내국인은 세금 미부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세금 부과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

조세 체계와 세목, 규정, 개별 세법 규정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와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도시경영, 자동차이용세)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결산, 이윤분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규정

3

기업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 관세, 이중과세방지

- 과세표준, 계산방법, 납부절차, 특례규정(감면 및 반환), 세율, 과세대상 등 상세 설명
- 무관세 원칙, 북한내 판매 시 세금 부과, 남북은 이중과세방지법을 준용

4

제재 및 신고 관련

- 제재 : 연체료, 벌금, 몰수, 영업중지 등
- 신고 :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고제기 가능, 기관은 신고를 30일 내 처리 규정

5

세금 관련 법률의 차이점

- 북한의 세금관련 법률은 큰 틀에서 유사하며 과세 대상에 대해 열거주의
- 세율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금강산 세금 규정은 대동소이, 개성공단은 차이
- 기업소득세 장려부분의 경우 각각 감면비율 축소 등 차이 존재, 개성공단의 경우 상당한 차이

금융관리

1

계좌 개설 및 보유

- 외국환업무를 하는 북한은행에 계좌개설 외국은행 계좌개설의 경우 합의 필요

2

투자상환 및 이윤배분, 이윤 등 국외 송금

- 북남경제협력법에는 규정X,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 합영법 규정 존재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국외 송금의 경우 남측은 남북당국 합의한 결제방식에 따라 정해진 은행이 외국인의 경우 제한없이 송금가능, 외국인은 외화의 60%까지 송금이나 반출 가능

3

외화관리의 기준과 범위

- 외화관리법 준용, 북한내에서 외화현금 유통금지(조선원 환전), 환전은 지정 은행에서만
- 외화이용범위, 외국환업무은행, 반입과 반출, 환율, 제재, 외화 대부 등 설명

4

보험관련 법제

- 남측의 경우 북남경제협력법을 준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 준용
- 중앙보험지도기관이 보험회사 설립 및 감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보험가입 의무

5

특수경제지대의 금융 관련 법률

- 공통적으로 각 지역별 유통화폐 및 기준화폐에 대해 협의 결정 가능, 유가증권거래 가능
- 황금평 위화도의 금융관련 규정은 라선과 유사하나 은행설립규정과 자금대부규정에서 차이

해산 및 청산

1

사유와 조건

-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해산
-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연장신청 가능
- 경영기간 만료 외에 불가항력적 사유, 경영손실 회복 불가, 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 선포
법규범 엄중 위반하여 해산선포 등 경우 해산

2

필요절차

-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 유사한 절차 준용

3

청산금 회수 방법

- 남측 투자자의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국내 회수
회수 후 대북투자사업 청산 및 대북채권 회수 보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 국내 회수가 중요
- 합작, 합영기업은 청산사업 비용, 세금, 노임, 채무 순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계약 도는 출자
몫에 따라 분배
- 외국인기업의 경우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재산 처분 불가

4

특수경제지대의 해산 및 청산관련 규정

- 개성공업지구, 금강사국제관광특구 등
- 특수경제지대법에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며 하위규정인 기업창설규정에 해당 규정을 둠

신소제도, 중재, 재판절차 등

1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협의, 협의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정, 중재, 재판 진행
- 신소제도, 중재절차, 재판절차 설명

2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 남북간 협의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
-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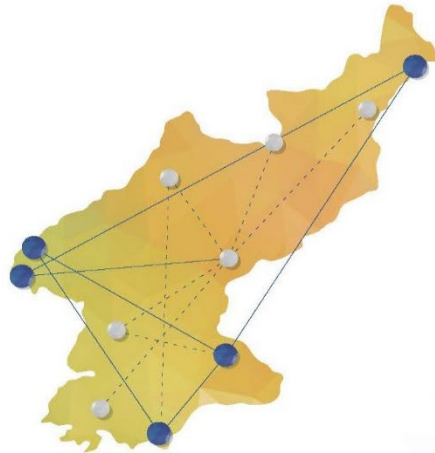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과 참고할 만한 해결 사례

-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의 제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동일
-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해결(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라선의 경우 다국적 인프라와 자본으로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특색이 있으나 실 사례를 알 수 없는 상황

북한 투자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실무가이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삼정KPMG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

두애북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지침서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입니다.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성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 김교태 삼정KPMG CEO

값 18,000원



ISBN 979-11-90255-08-0 03320

Contact

김광석 센터장/부대표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Tel:+82 (02) 2112-0723

kwangseokkim@kr.kpmg.com

조진희 이사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Tel:+82 (02) 2112-7454

jinheecho@kr.kpmg.com

홍승표 수석연구원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Tel:+82 (02) 2112-2743

seungpyohong@kr.kpmg.com